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3일

3. 제안이유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축분뇨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 명시(안 제5조)
-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 근거 마련(안 제7조)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안 제8조)
- 자원순환 활성화 미 실천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안 제9조)
-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포상 규정(안 제1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충북의 산업 및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축산분야 역시 예외일 순 없으며, 축산 분야, 특히 가축분뇨처리가 농업부분에서 탄소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에 기존의 관행적 축산분뇨 처리방식에서 벗어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 및 충북 축산업의 현주소는 소득수준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가축분뇨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도내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 현황('21년)

'21년 12월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8,962톤, 연간 3,271천톤임

-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육우 38.3%, 돼지 35.4%, 닭·오리 16.7%, 젓소 8.3%, 기타(개, 염소, 사슴 등) 1.3%로 나타남

축종	사육두수 ('21년 12월)	1일 배출량 (환경부고시)	발생량		
			1일	연간	비율
계	13,522,216	-	8,962톤	3,271천톤	100%
한육우	250,745	13.7	3,435톤	1,254천톤	38.3%
젓소	19,593	37.7	739톤	270천톤	8.3%
돼지	622,610	5.1	3,175톤	1,158천톤	35.4%
닭·오리	12,489,184	0.1	1,499톤	547천톤	16.7%
기타(개, 염소, 사슴 등)	140,084	개 1.1, 사슴·염소 0.7	114톤	42천톤	1.3%

※ 축종별 1일 분뇨 발생량 : 환경부 고시기준

지난해 발생한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 88.3%, 정화방류 11.7%로 나타남

- 자원화 처리된 2,888천톤 중 공동자원화 4.6%(150.5천톤), 퇴비화 70.8%(2,315.9천톤), 액비화 12.9%(421.9천톤)로 처리 되었음

가축분뇨 발생량	자원화(88.3%)			정화방류(11.7%)	
	공동자원화	퇴비화	액비화	공공처리	개별방류
3,271천톤 (100%)	150.5 (4.6%)	2,315.9 (70.8)	421.9 (12.9%)	153.7 (4.7%)	228.9 (7.0%)

- 이러한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되어 토양에 환원시키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19년 69.4%에서 '21년 88.3%로 자원화율을 향상 시키는 노력이 있었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악화 및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방향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가축분뇨처리(자원화율) : ('19년) 69.4% → ('20년) 88.3% → ('21년) 88.3%

- 따라서 축산분뇨 자원화 비율의 상향 및 자원화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축산업의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수 있어 **축산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본 조례의 주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2013.10.01
강원도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3.12
충청남도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전라북도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21.10.01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13.05.20
경상북도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21.01.04
경상남도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2019.12.26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축”, “가축분뇨”, “자원순환”,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정의함
 - 본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자원화조직체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체·법인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3조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및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의 책무를 부여하였음
- 안 제4조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과 전망을 통해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처리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들을 명시함
 - △자원순환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 사업 △고품질 퇴비·액비의 생산지원 사업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자원순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식을 확대 및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를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 가축분뇨 자원 에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군별 자원순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임
 -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화조직체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 제9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을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축산분야 탄소배출 감축이 요구 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에 따른 처리 부담 가중과 공동 자원화시설의 운영 악화 및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등 따라 기존의 관행적 축산분뇨처리에서 벗어나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방향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화된 퇴·액비를 소비할 수요처가 줄어들고, 농경지 양분과잉 문제 등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축산분뇨의 퇴·액비로의 활용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화까지 확대하는 등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본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축산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원화비율의 상향 및 자원화 다변화를 통해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축산업이 야기시키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경영 안정 도모 등을 통해 축산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